

2010.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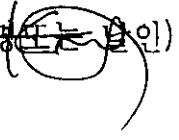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헌혈권장 조례안 발의

「제천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헌혈권장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이정임 의원 (서명 )
외 6인

「제천시 현혈권장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정인	이정인	
김꽃잎	Kim	
조덕희	조덕희	
오선희	오선희	
박승동	박승동	
최상기	최상기	

김기상 *John*

제천시 헌혈권장 조례안

의안번호	1469
------	------

발의연월일 : 2010. 11. 17.
발 의 자 : 이정임 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헌혈권장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0. 10. 27(수) ~ 2010. 11. 16(화)(20일간)

○ 의견제출

- 제 출 자 : 제천시장(보건위생과장)
- 내 용 : 헌혈의집 설치에 어려움 및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함.

○ 검토결과

- 입법예고시 조례안 내용에 “헌혈의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시행 초기에는 헌혈활동 권장을 위한 홍보비가 일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서의 예산(수용비 등)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부족 문제는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필요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임.
- 타 시도 4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중이며, 기타 조례추진상 문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 붙 임 : 1.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안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끝.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라 함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평가)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신자 제천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제출

1.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 3528(2010.10.28)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보건위생과)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조례안 검토의견

조례안	검토의견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 (보건위생과)	- 헌혈의집 설치에 어려움 및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함.

끝.

제천시장

★ 주무관

법무감사팀장

전략기획실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전략기획실-11357 (2010.11.09.) 접수 의회사무국-3647 (2010.11.09.)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번지)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531 / 전송 043)641-5499 / oxen6112@korea.kr / 공개